

## 해외이주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주지역	국	시		
	이주종류	병역관계	병역필·미필·면제		
	최종학력	직업			
동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병역	신고인과의 관계
초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체류 자격	신고인과의 관계		
	현주소				

「해외이주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이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 외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2.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말합니다)의 해외이주 동의서 1부(미성년자 단독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계획서 1부(사업이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대출잔액 보유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6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다음 각 목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신고인의 해외이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서류.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합니다. 가. 가족관계증명서(친족 관계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초청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라. 기본증명서(무연고이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3.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적힌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